

의정활동보고서

제178회 임시회(2003. 4. 9 ~ 4. 1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178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봄도 무르익어 만물이 날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생동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국내·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종전의 기미가 보이고 전후 복구문제가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국제유가는 불안정하며 물가상승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여 그 어느때 보다 국내 경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때 일수록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종전이 되어 국제사회가 평온을 되찾은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구촌 인류의 한결 같은
염원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안타깝게 道 관내에서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축산농가
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을 대량으로 도살처분 하는등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피질이 전세계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과 병행하여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질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와 천안 초등학교
화재사고에서 보았드시 평소 재난예방 대책과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에도 게을리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비록 국 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하여 “지방분권특별법”을 금년내 제정하고 핵심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에 발맞추어 지난 회기에 이미 지방자치
발전 분권특별위원회를 정비하여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해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처리 이외에도 2002회계
연도 도청과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 선임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정과 경제회생에 최우선을 두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갑시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4. 9

경상북도회의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위원회 활동사항

4. 기타사항

V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 례 안

☐ 기 타 안

I. 개 황

- 경상북도의회 제178회 임시회는 2003년 4월 9일 개최하여 4월 18일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4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 4월 9일(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8회경상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에 휴회하였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중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 4월 18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박종욱, 권종연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의결하고
-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78회 임시회를 폐회 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소집 요구 : 방유봉 의원외 19인

라. 집회공고일 : 2003. 3. 25

마. 집 회 일 : 2003. 4. 9(수)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3. 4. 9 ~ 4. 18(1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 회(누계 25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4	1	1	1				1	
누계	114	13	13	16	17	14	14	13	14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3. 4. 9(수) 11:00	1. 제17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 "
4.18(금) 11:00	1.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제 2 차 원안가결 " " " " " " "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4. 18(금) 10:27	1. 제179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4. 16	○ 현지 확인 - 김천의료원장례식장증축공사	
4. 17(목) 11:00	1.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4. 10(목) 11:00	1.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
4. 14~4. 15	○ 현지 확인 - 북부지역종합청사건립공사(안동 풍산) - 문화마을조성사업(영주 장수) - 오지개발사업(영주 단산) - 도계가꾸기사업(봉화 춘양)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4. 16~4. 17	○ 현지 확인 - 대구·경북국제한의학박람회참관(EXCO)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경산교육청관내(장산·정평초등,문명고등)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4. 10~4. 12	○ 현지 확인 - 풍력발전시설실태,관광자원화 확인(울릉도)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4. 10(목) 11:00	○ 위원회 회의(주요 현안사항보고) ○ 현지 확인 - 하천골재채취현장(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낙동강 등)	
4. 16(수)11:00 4. 16~4. 17	○ 주요업무보고 ○ 현지 확인 - 공항건설현장 및 소방관서(울진공항 건설 현장, 울진소방서)	제 1 차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7 (96)	7 (96)	7 (88)	(8)				
조 례 안	소 계	5 (38)	5 (38)	5 (37)	(1)				
	의 회 제 안	(1)	(1)	(1)					
	도지사 제 출	5 (30)	5 (30)	5 (29)	(1)				
	교육감 제 출	(7)	(7)	(7)					
예 산 · 결 산		(8)	(8)	(4)	(4)				
동 의 · 승 인		(26)	(26)	(25)	(1)				
건 의 안		(7)	(7)	(6)	(1)				
결 의 안		(6)	(6)	(6)					
기 타 안		2 (11)	2 (11)	2 (10)	(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7 (97)	7 (96)	5 (38)	(8)	(26)	(7)	(6)	2 (11)			(1)
의회운영	(1)	(1)	(1)								
기 획	2 (11)	2 (11)	2 (6)		(3)	(1)		(1)			
행정사회	3 (27)	3 (26)	3 (17)		(8)	(1)					(1)
교육환경	(10)	(10)	(7)		(3)						
농 수 산	(7)	(7)	(2)		(4)	(1)					
산업관광	(11)	(11)	(4)		(6)		(1)				
건설소방	(6)	(6)	(1)		(2)	(2)		(1)			
특 별	(8)	(8)		(8)							
본회의	2 (16)	2 (16)				(2)	(5)	2 (9)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	-	-	
누 계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2 (32)	(2)	(3)	(4)	(5)	1 (2)	(3)	(3)	1 (4)	(6)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2)	(1)		(1)						
교육환경	1 (4)					1 (2)		(2)		
농 수 산	1 (5)			(1)	(1)				1 (3)	
산업관광	(8)		(3)				(3)			(2)
건설소방	(11)	(1)		(2)	(4)			(1)	(1)	(2)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4 (31)	4 (31)				1 (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1 (2)	1 (2)				
교육환경	(3)	(3)				1 (1)
농 수 산	1 (5)	1 (5)				
산업관광	2 (8)	2 (8)				
건설소방	(11)	(11)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3. 31)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 획 (2003. 3. 31)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3. 31)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기 획 (2003. 3. 31)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3. 31)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 정 사 회 (2003. 3. 31)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3. 31)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행 정 사 회 (2003. 3. 31)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3. 31)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행 정 사 회 (2003. 3. 31)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3. 3. 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2003. 3. 27
2003. 3. 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2003. 3. 27
2003. 3. 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3. 3. 27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농수산위원회	2003. 3.25 11:00	농수산위원회 회 의 실	○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긴급간담회 · 집행부의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토론 · 방역 및 소비촉진대책 촉구
의회운영위원회	2003. 4. 2~ 4. 4	대전, 서울 제주도의회	○ 대전, 서울, 제주도의회를 방문 하여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등을 비교시찰함

4. 기타사항

○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한나라당 토론회

- 일 시 : 2003. 3. 18(화)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도 협의회장

○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3. 3. 19(수) 13:00
- 장 소 : 안동 파크호텔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3. 3.19(수) 14:00
- 장 소 : 대전시의회 회의실
- 참 석 : 손규삼 운영위원장

○ 이라크사태관련 대구·경북지역안정대책회의

- 일 시 : 2003. 3.21(금) 09: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도정 협의회

- 일 시 : 2003. 3.21(금) 15: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종 부의장, 이상천 한나라당 도협의회장

○ 도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식

- 일 시 : 2003. 3.24(월) 11: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중 부의장

○ 대구·경북 발전협의회

- 일 시 : 2003. 3 26(수) 07:30
- 장 소 : 그랜드 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육군 3사관학교 임관식

- 일 시 : 2003. 3. 26(수) 14:00
- 장 소 : 3사관학교 충성연병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축구 동호인클럽 경북리그』 창설 기념식

- 일 시 : 2003. 3. 27(목) 14:30
- 장 소 : 현대 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한나라당 토론회

- 일 시 : 2003. 3. 27(목)
- 장 소 : 한나라당 중앙당사
- 참 석 : 이상천 도 협의회장

○ 도 민족통일 협의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3. 3. 29(토) 11:00
- 장 소 : 인터불고 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부패방지대책 보고회

- 일 시 : 2003. 3. 31(월) 10:20
- 장 소 : 청와대 영빈관 1층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3. 3. 31(월) 12:00
- 장 소 : 서울 프레스클럽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범도민 희망의 꽃심기 행사

- 일 시 : 2003. 4. 1(화)
- 장 소 : 예천 국제양궁경기장
- 참 석 : 이현준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 한국전력경북지사 고객자문회의

- 일 시 : 2003. 4. 4(금) 12:00
- 장 소 : 한전 경북지사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제58주년 식목일 기념행사

- 일 시 : 2003. 4. 5(토) 10:30
- 장 소 : 안동역 광장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제3회 보건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03. 4. 7(월) 11:00
- 장 소 : 포항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

○ 경북복싱연맹 회장 취임식

- 일 시 : 2003. 4. 8(화) 11:00
- 장 소 : 안동 신라웨딩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의정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 일 시 : 2003. 4. 8(화) 12:30
- 장 소 : 그랜드 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종 부의장

VI. 5분자유발언

□ 제2차 본회의

박종욱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원래 자기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안건은 본회의에 나오지 않고 상임 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종결되어야 마땅하나 이번 회기 중에 교육환경 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개최 못하고 현지를 갔습니다.

부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시일이 촉박하고 또 오래 끌어서 안 되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기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에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위반을 하면서 이서 중·고등학교 재단이 2000년11월18일날 23억5,000만원에 재단을 인수 했습니다.

동년 건축업자 경도재단이 인수예정자로서 학사 개입을 하기 시작 해서 교사 37명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게재하고 교육청을 방문하고, 부교육감을 면담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인수 후에 직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재도 선생을 직위 해제 시킴으로 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2001년1월17일부터 동년 8월7일까지 재단이 경찰서에 선생을 고발한 사건이 무려 11건인데, 대다수 사건명이 재단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감독관청인 우리 도 교육청에서 하루빨리 이해당사자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라는 수습을 해 주기를 권하고, 아울러 지난 4월 3일~4월 4일 이틀 동안 경도학원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6명의 선생을 징계를 결정하고도 발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과거에 전에 있던 재단에 속해있던 선생들과 현재 새로이 인수한 정도재단의 소위 마찰로 봅니다. 또한 어느 쪽이든 간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지휘하고 있는 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적의 조치를 못한 것을 통감하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교육계에서 최근까지 문제가 되는 우리 경상북도내 지난 2002년9월부터 금년 3월까지 무려 6건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2년9월25일 안동 북주초등학교 연회식장에서 교감이 여교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교감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여교사가 여성부에다가 시정 신청서를 접수해서 여교사 남편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 고발했습니다. 현재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12월14일 봉화교육청 학무과장이 초등교사 연수에서 북주초등 여교사의 유산과 관련해서 “소리 한번 지른다고 유산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식의 비하의 발언을 하고 이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봉화교육청 학무과장이 3월1일자 청송 현서 화목초등학교 교장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인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12월17일 울진 사동초등학교 교장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 여교사가 청와대 민원실과 여성부에 시정 신청하고 도 교육청 열린마당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가해 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정직 1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3월 인사 전보에서 울진 사동초등학교에서 울진 온정초등학교 교장으로 영전됐습니다.

2003년2월 영덕 남정초등학교 교감 성추행 사건, 영덕 남정초등학교 이 아무개 교감은 1년에 걸쳐 20여 차례 초등학교 5학년생 김 아무개 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교감이 딸을 관사와 학교 도서관으로 불러내서 성추행 했다고 합니다.

영덕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지난 '96년에 학생 성추행으로 감봉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 25일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3년3월6일날 울진 매화중고 이 모 교사가 안동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성추행해서, 이 양반이 그 때 신규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 포항 사건입니다.

홍해초등학교 교장의 학부모 성추행 문제입니다. 이거는 도하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홍해읍의 횃집에서 어머니회장 송 별식에서 귀가하는 학부모 35살 이 모씨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다가가다가 이 모씨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무는 등 강제추행으로 2주간의 상처를 입히고 김 교장은 포항지원에서 구속적부심에서 공탁금 1,000만원과 자신의 주소지를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속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되겠습니다마는 이 교장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곧 이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홍해초등학교 교장선생의 명의로 탄원서를 만들었습니다. 탄원서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도덕적으로나 어떻게 보든 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또한 학부형측에서 한쪽은 교장 편이고, 한쪽은 피해자 편입니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열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어저께만 해도 여기에 편을 드는, 이 교장선생 사이드(side)의 학부형들이 피해자 쪽에다가 계속 전화를 넣고 해서....

이 피해자측에 진술을 옳게 한 사람들에게 또 협박을 하다가 그 교장 측의 학부형 두 사람이 입건된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는 서로가 진위공방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어느 쪽도, 양쪽의 어느 쪽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경도재단 문제하고, 이 성폭행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신속히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응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지방대 한의과 대학이 설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와 농업 등 지역경제기반의 약화로 경제적인 낙후와 주민들의 소외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로서 재배면적 2,001ha,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9,000톤으로서 전국의 30%가 됩니다. 전국 한약재 유통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북부지역의 청정한방자원을 활용, 지역전략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약을 재배, 연구부터 가공생산, 체험관광까지 연계하는 한방산업육성의 모델로서 상주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기업과 영주에 인삼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초시험장·인삼시험장·생물자원연구소 등 다수의 약용작물연구소가 이미 설립되었고, 한약재 가공·유통관련 업체도 현재 13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대학특성과의 관계로 볼 때 안동대학교는 이미 국학분야와 지역의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한 생명자원과학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95년부터 30여에 걸쳐 교육부·행정자치부·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한의학과 설치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6년6월에 국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한의학과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안동대학이 최적지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97년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국립안동대학교에 한의학과 설치를 적극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의 국립대학 한의학 육성의 당위성으로는 첫째, 현대 의학의 한계극복을 위한 또다른 분야 개척의학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방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한국을 동양의학의 핵심메카로 조성하여야 하고, 세계 각국이 미래의 의술로서 한방의 과학화·표준화·규격화와 의료부분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교육활동에 의한 한국형 의료모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4월4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에 대한 연구를 사립대학에 일임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에도 설치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전국 8개대학으로부터 한의과대학 설치신청을 받아 놓고 2002년 이후로의 결정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은 안동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하여 협력운영하고, 대구·경북 국립대학교의 연합체계가 완성되면 대구·경북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으로 공동운영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리는 것이 지방분권추진의 본질로 볼 때 본의원은 안동대 한의과대학 설치에 지사께서는 특단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 록

- 조 례 안 : 5건
- 기 타 안 : 1건

□ 조 례 안 : 5건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4. 18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자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생략) ②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생략)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4. 18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경상북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경상북도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담당관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통신담당관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통신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관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통신담당관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관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요시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실에서 총괄·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실장은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전자민원처리) ①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전자인증 또는 찾을 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함)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민원신청시의 수수료 납부정보를 통해 납부사실이 확인되거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의 전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도지사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도지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① 도지사는 지역 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국외에 경상북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통신담당관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 및 매주 전체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정보통신담당관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4. 18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별표1〕경제통상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중
경제교통정책과란 건명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호를
삭제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경제교통 정책과	5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의 이관 (일반화물 제외) 나. 영업소 설치(일반화물 제외) 다. 등록증 개서 등(일반화물 제외) 라. 운송약관 신고 마. 개선명령 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신고 (일반화물 제외) 사. 등록취소 등 처분 아.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반납·반환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계획 수립·시행 차. 청문 카. 실태조사 타. 보고·검사 및 질문 파.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8조 동법제7조 동법제12조 동법제14조,제15조 동법제17조,제48조, 제49조 동법제18조 동법제19조 동법제20조 동법제32조 동법제44조 동법제50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경제교통 정책과	5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의 이관 나. 영업소설치신고 다. 주선약관 신고 라. 개선명령 마.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신고 바. 등록취소 등 처분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계획 수립·시행 아. 청문 자. 실태조사 차. 보고·검사 및 질문 카.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동법제21조규칙제41조 동법시행규칙제37조 동법제24조 동법제24조 동법제24조 동법제24조 동법제24조 동법제24조 동법제24조 동법제32조 동법제44조 동법제50조	시장 군수

보건환경산림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중 수질보전과란에 제4호를 삭제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수 질 보전과	9.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명령 10.절수설비 및 절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명령	수도법 제11조 제4항 수도법 제11조의2 제4항	시장 군수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별표 1】

신 · 구조문 대비표

경제통상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제 교통 정책 과	1 ~ 54(생략)		<u>시장</u>	경제 교통 정책 과	1 ~ 54(현행과 같음)		<u>시장</u>
	55.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반환 및 봉인	<u>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8조</u>	<u>군수</u>		5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의 이관(일반화물 제외) 나. 영업소 설치(일반화물 제외) 다. 등록증 개서 등(일반화물 제외) 라. 운송약관 신고 마. 개선명령 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신고 (일반화물 제외) 사. 등록취소 등 처분 아.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반납·반환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계획 수립·시행 차. 청문 카. 실태조사 타. 보고·검사 및 질문 파.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 신청 처리	<u>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조, 동법 제7조제1조 동법 제7조제8조 동법 제7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제15조 동법 제17조제18조 제49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50조</u>	<u>시장 군수</u>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제 교통 정책 과	<u>5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운송주선약관 및 주선약관변경신고수리</u> 나. <u>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신고수리</u> 다. <u>상속신고수리</u>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시장 군수	경제 교통 정책 과	<u>5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등록 및 등록의 이관</u> 나. <u>영업소설치 신고</u> 다. <u>주선약관 신고</u> 라. <u>개선명령</u> 마. <u>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신고</u> 바. <u>등록취소 등 처분</u> 사. <u>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계획 수립·시행</u> 아. <u>청문</u> 자. <u>실태조사</u> 차. <u>보고·검사 및 질문</u> 카. <u>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u>	동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50조	시장 군수
	<u>57.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사용 또는 폐지 신고수리</u> 나. <u>유상운송허가</u> 다. <u>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u> 라. <u>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반환 및 봉인</u>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0조 제2항	시장 군수		<u>57. <삭제></u>		

보건환경산림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질 보전과	1~3(생략)			수질 보전과	1~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전용상수도 인가 및 준공 검사	<u>수도법</u> 제36조, <u>시장</u> 제 15 조 제1항	<u>군수</u>		(삭 제)		
	5~8(생략)	(생략)	(생략)		5~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신설)				9.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명령	<u>수도법</u> 제11조 제4항	<u>시장</u> <u>군수</u>
	10.(신설)				10. 절수설비 및 절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명령	<u>수도법</u> 제11조의 2 제4항	<u>시장</u> <u>군수</u>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4. 18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의 실과명 경제교통정책과 위탁사무명란에 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명	위탁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경제교통 정책과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나. 화물자동차운전자 관리 및 운전자격확인증교부 다. 사업의 휴·폐지신고	업종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제20조 동법 제16조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나. 사업의 휴·폐지신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협회 이사장 “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4. 분쟁조정	한국소비자보호원장	동법 제8조
	5. 운수종사자 교육	업종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처리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경제교통정책과

현행				개정안			
실과별	위탁 사무명	사무 수탁자	근거법령	실과별	위탁 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경제 교통 정책 과	1. (생략)			경제 교통 정책 과	1. (현행과 같음)		
	2. <u>신설</u>				2. <u>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2조</u>
					가. <u>등록사항의 변경신고</u>	업종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나. <u>화물자동차운전자 관리 및 운전자격 확인증 교부</u>	“	<u>동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u>
					다. <u>사업의 휴폐지신고</u>	“	<u>동법제16조</u>
	3. <u>신설</u>				3. <u>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u>등록사항의 변경신고</u>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협회 이사장	<u>동법시행규칙 제36조</u>
					나. <u>사업의 휴폐지신고</u>	“	<u>동법시행규칙 제40조</u>
	4. <u>신설</u>				4. <u>분쟁조정</u>	한국소비자보호원장	<u>동 법 제8조</u>
	5. <u>신설</u>				5. <u>운수종사자 교육</u>	업종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u>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u>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4. 18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 2]의 6.관광운수관계란의 (6)폐차사업허가 다음에 (7) 내지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6. 관광운수관계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등록신청	1건	기본 14,000, 대당 2,000
(나) 변경등록신청	"	기본 5,000, 대당 2,000
(다)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신고	"	3,000
(라) 약관신고	"	2,000
(마) 등록사항변경신고	"	2,000
(바) 휴지·폐지신고	"	1,400
(사) 등록증재교부	"	2,000
(아) 영업소등록	"	기본 14,000, 대당 2,000
(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가) 등록신청	"	16,000
(나) 등록사항변경신고	"	1,400
(다)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신고	"	3,000
(라) 약관신고	"	2,000
(마) 휴지·폐지신고	"	1,400
(바) 영업소설치신고	"	6,000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구분	기준	요액
6.관광운수관계 (1)~(6) 생략 (7) 신설 (가)~(아)신설			6. 관광운수관계 (1)~(6) 생략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등록신청 (나) 변경등록신청 (다)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신고 (라) 약관신고 (마) 등록사항변경신고 (바) 휴지·폐지신고 (사) 등록증재교부 (아)영업소등록	1건 " " " " " " "	기본 14,000, 대당 2,000 기본 5,000, 대당 2,000 3,000 2,000 2,000 1,400 2,000 기본 14,000, 대당 2,000
(8) 신설 (가)~(바)신설			(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가) 등록신청 (나) 등록사항변경신고 (다)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신고 (라) 약관신고 (마) 휴지·폐지신고 (바) 영업소설치신고	" " " " " "	16,000 1,400 3,000 2,000 1,400 6,000

※ 징수근거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규정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을 뿐 수수료액은 변동 없음

□ 기 타 안 : 1건

-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

의안 번호	96
----------	----

제 의 년월일 : 2003. 4.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의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교육청의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한다.

2. 제의사유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나. 자치단체가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고 검사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제도상이나 운용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

3. 제의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 9명(인적사항 : 불임1)

- 도 의 원 (3명) : 손만덕, 채희영, 손경찬
- 공인회계사 (2명) : 김희철, 김기범
- 세 무 사 (2명) : 최성탁, 권영흡
- 재무관련 경험자 (2명) : 서권용, 박충웅

나. 위촉기간 : 2003. 5. 21 ~ 6. 9(20일간)

※ 업무사정에 따라 검사기간 조정 또는 연장

다. 결산검사 대상

- 200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02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검사 선임위원 인적사항

구분	성명	연령	주요경력	연락처	비고
계	9명				
도의원	손만덕	60세	· 제5대, 제6대도의회 의원 · 제7대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 행정사회위원	011-506-8371	
	채희영	63	· 제6대도의회 산업관광위원장 · 제7대도의회 건설소방위원	016-515-3025	
	손경찬	44	· 영덕군의회의원 · 제7대도의회 산업관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011-9054-9558 016-9899-4117	
공인회계사	김희철	33세	· 중소기업청기술경쟁력 평가위원 · 동구청 결산검사위원('99) · 경북도청 결산검사위원('01)	016-614-6728	
	김기범	33	· 경북대대학원 경영학과졸('97) · 미국공인회계사 합격('03)	016-810-9634	
세무사	최성탁	46세	· '80~'96 세무서 근무 · 2000. 11월 세무사 개업 · 경북도청 결산검사위원('01)	011-9065-2895	
	권영흡	46	· '76~'99 세무서 근무 · 2001. 11월 세무사 개업	011-532-2871	
재무경험자	서권용	62세	· 회계과 경리계 근무 · 전.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00)	011-520-1664	
	박충웅	61	· 전.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 전.경상북도포항교육청 관리국장	016-506-8844	

의정활동보고서(제178회 임시회)

2003. 4 인쇄 / 2003. 4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